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78호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5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 도입에 따라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품목 도입에 따라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개정 (안 별표1)
-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에 대한 별도 항목 신설

3. 의견제출

『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』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1일 일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참조 :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

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(담당연구관 : 류도열 전화: 043-870-5443, 팩스 043-870-5676)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e.go.kr>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 :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((우) 27737)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 분류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	모델구분	
카. 조명기기	7) 5)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가) 체인형 조명기구 나) 충전식 휴대전등 다) 투광조명 등기구 라) 할로겐등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격전압 ○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(조명기구 중 에디슨 나사형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) ○ 정격전류 ○ 램프의 수 ○ 방수보호등급 ○ 램프의 종류
	마)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격전압 ○ 정격전류 ○ 방수보호등급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